

# LG생활건강 성희롱 금지 정책

제 정 : 21년 7월

LG생활건강은 성희롱, 즉 사업주·상급자·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우월적 지위·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, 성적 요구 등으로 **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,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** 성희롱 행위는 무관용 정책에 따라 접수 직후 즉각 대응하며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원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 또한, 사실 여부 확인을 통해 행위가 확인된 경우, 징계, 시정 조치, 법적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.

## 성희롱 예방 교육

1년에 한 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.

## 신고 및 상담 프로세스

### 1 고충접수

Plus-1 내 '성희롱/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'에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, 메일/전화/면담을 통한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.

### 2 공식처리절차

성희롱 심의위원회(성희롱 담당 기구)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.

### 3 비공식처리절차\*

신고인의 요구 내용을 정리 및 검토하여 피신고인에게 요구안을 전달합니다. 피신고인이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요구안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,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,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의안을 도출한 후 합의안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.

\*신고인이 비공식처리를 원하는 경우 비공식처리에 의거하여 진행함

## 징계 및 시정 조치

1 성희롱 담당 기구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행위자에 대해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한 인사, 징계 조치를 내립니다.

2 사건 종료 이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식 및 실태 조사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.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, 지속적으로 행위자와 피해자를 관리합니다.

3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유급 휴가, 행위자 대기 발령 등 임시분리 조치를 취합니다. 또한, 내부 심리 회복 프로그램 또는 국가 지원 심리 치료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심리 치유를 적극 지원합니다.